한-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

<한-베트남 FTA HS기준연도 변환(HS2012→HS2017)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안내>

2022년 8월 1일자로 한-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(PSR)의 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17로 변환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, 한-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.

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

관세청은 PSR의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업체의 신규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,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요건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<u>22.10.31.까지 인증사항</u>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1. 안내문과 함께 첨부된 세번(시트1)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어 인증 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므로, 해당 세번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에서는 관할세관장에게
 - 인증사항 변경신고서,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
 - 또는 인증만료일이 1년 이내로 인증연장을 희망하는 경우, <u>인증연장</u>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2. 1의 경우를 제외하고, 인증받은 세번(HS2012)과 HS2017기준의 세번이다른 경우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(HS·PSR)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(시트2)
- 3. 인증받은 세번(HS2012)과 HS2017기준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 - ※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는 '관세청FTA포털 (www.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) → FTA 자료실 → FTA 서식모음

→ 한-베트남 FTA,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'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

'22.8.1.부터 한-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HS2017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오니,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에서는 HS2017에 따른 세번으로 원산지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기한 내에 자율점검 후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,

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붙임 : 한-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,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. 끝.